

物質特許制度가 國內産業에 미치는 影響

I. 우리나라의 産業政策과 特許制度

우리나라 産業은 1953年 休戰成立을 契機로 産業再建을 推進하면서 實質的인 近代化的 過程을 밟게 되었는데 그로부터 不過 30餘年の 日淺한 成長過程을 거치면서 工業化的 成熟段階에 到達한 程度로 매우 刮目할 成果를 올리고 있으며 世界的으로 關心의 표적이 될만큼 高度成長을 이룩하였다.

이와 같은 高度成長은 그 達成過程에서 時代別로 發展類型을 달리하면서 成就된 것인데 各 段階別 類型의 特徵을 보면 戰後復興期인 1950年代에는 經濟復興과 民生安定에 開發政策의 力點이 두어져 食品·고무·纖維 및 製紙 등 消費財工業이 集中的으로 育成되었으며, 그 뒤를 이어 電力 등 社會間接資本과 시멘트 등 基幹産業이 開發됨으로써 工業發展을 위한 基盤을 構築하였다.

1960年代에는 經濟開發計劃의 實施와 더불어 工業化가 加速化되고 工業部門의 比重이 높아짐에 따라 産業構造도 近代化되었다.

다시 말해 1962年 着手된 第1次 經濟開發 5年計劃에서는 基幹産業 育成과 電力增産 등 社會間接資本 擴大에 注力하여 工業化가 促進되었으며 도약단계 進入을 위한 與件이 造成되었다.

1970年代에는 重化學工業을 重點的으로 育成하여 高度의 經濟成長을 이룩하면서 中進國으로 도약하였다.

또한 産業構造에 있어 重化學 工業部門의 比重이 輕工業部門을 앞서는 先進國型的 工業構造를 보여 新興工業國의 면모를 誇示하였다.

그러나 重化學工業 爲主인 産業構造에서의 發展의 限界와 重化學工業의 育成過程에서 輕視되어 왔던 에너지·資源·環境 등 成長의 障礙要因들이 漸次 浮刻됨에 따라 安定的 經濟成長을 위한 減速 經濟體制로의

轉換과 함께 知識集約的 産業構造로의 轉換이 不可避하게 되었다.

1980年代에 있어서는 1979年の 2次 石油波動과 世界的인 景氣不況의 持續으로 우리나라 産業은 外延成長에서 內質成長 爲主로 成長패턴의 轉換을 꾀하였으며, 이에 따라 重化學工業의 投資調整 등 産業의 構造改編을 追求하는 한편 技術開發과 生産性 向上 등 國際競爭力提高를 위한 産業合理化努力이 集中的으로 傾注되고 있으며 半導體·컴퓨터·生命工學 및 新素材産業 등 尖端産業의 開發도 活潑히 推進되고 있다.

특히 1980年代의 國際貿易環境은 50~60年代의 自由貿易秩序가 퇴조하고 70年代의 石油危機를 거치면서 不況에 進入한 世界經濟가 長期的 경제현상을 보여 成長의 鈍化, 失業의 增加, 國際收支 赤字의 累積에 直面함에 따라 美國을 비롯한 先進國들은 自國 輸入商品에 대한 輸入規制와 함께 相對方 國家의 市場開放要求 및 通商에 있어서의 相互主義를 強하게 要求하고 있으며 이와 함께 GSP受惠에 있어 卒業概念의 適用 및 競爭力 充足基準을 強化해 나가고 있다.

이와 같은 狀況에서 우리의 産業政策은 美國을 비롯한 先進國의 保護主義傾向에 積極적이고 能動的으로 對處하기 위하여 産業의 國際競爭力 強化를 爲한 産業合理化 및 研究開發投資의 擴充을 통한 技術開發努力과 貿易相對國과의 摩擦要因을 除去하기 위한 努力을 繼續하고 있다.

이와 같이 우리의 産業政策은 時代에 따라 그 類型을 달리해 왔는 바, 特許制度 역시 産業政策의 變化에 따라 조금씩 그 모습을 달리해 왔다.

特許制度의 目的은 궁극적으로 技術開發을 통한 國家産業의 發展에 있으므로 産業政策과 密接하게 關聯되어 있어 그 目的을 達成하기 위한 特許制度의 選擇과 運用은 社會가 處한 諸般環境에 의해 決定된다.

즉, 化學産業과 關聯한 우리나라 特許制度의 變遷을

- … 1980年代 初부터 物質特許의 採擇 與否를 둘러싸고 많은 論議를 거듭해 오다가 지난해 7月 韓·美…○
 ○…間 通商 懸案의 一括 妥結에 따라 우리나라는 오는 7月부터 物質特許를 實施할 計劃으로 있다. ……○
 ○… 그러나 通商摩擦의 解消라는 側面이 強調되어 物質特許制度 自體에 대한 認識에는 소홀했던 점이…○
 ○…없지 않았다. 이에 따라 그 동안 本會가 本誌 보도 및 研修 그리고 세미나 등을 통해 여러차례 認識…○
 ○…提高에 努力해 왔는데도 物質特許에 대한 問議가 殺到하고 있다. 특히 實施가 가까워지면서 「物質特…○
 ○…許가 國內産業에 미치는 影響」을 묻는 問議가 빗발치며, 상세한 內容을 報道해 달라는 注文도 줄을…○
 ○…이고 있다. ……○
 ○… 이에 따라 本誌 編輯室에서는 이들의 注文을 받아 들어 우선 1次로 物質特許가 國內産業에 미치는…○
 ○…影響을 特許廳 發刊 「物質特許制度의 考察」을 통해 알아보았다. ……○〈編輯者 註〉……○

보편 基幹産業의 育成에 따른 工業化를 推進하였던 1960年代에는 幼稚段階에 있던 國內 化學工業의 保護와 育成을 위한 産業政策에 발맞추어 1962年 制定된 特許法에서는 化學物質을 不特許事項으로 하였으며, 1973년에는 化學物質의 用途發明도 不特許事項으로 하였다.

그러나 1980年代 國際貿易環境의 變化와 함께 製造方法 特許制度下에서의 研究開發投資不振으로 인한 低位의 技術水準 및 技術保護主義에 따른 先進國의 技術移轉 忌避 등의 問題點이 擡頭됨에 따라 政府는 1980年부터 韓·美間에 舉論되기 始作한 物質特許 採擇問題에 대하여 精密化學産業의 研究開發投資와 技術開發을 促進하고 우리의 對外開放의 輸出指向型 經濟政策의 成功的 遂行을 위하여 物質特許制度를 採擇키로 하였으며 이에 따라 特許許與範圍의 擴大 및 特許期間의 延長等 現行 特許制度를 改善한 새로운 特許制度를 1987年 7月부터 施行키로 하였다.

II. 特許制度의 變化內容

가. 特許許與 範圍

1987年 7月부터 施行되는 改正特許法은 現在 不特許事項인 化學的 方法에 依해서 製造되는 物質自體, 그 物質의 用途發明, 醫藥 및 醫藥調劑方法 등에 對하여 特許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 동안 物質特許制度의 導入을 비롯한 特許許與範圍의 擴大에 對하여 産業界등 一部에서 反對가 있었으나 物質特許保護에 對한 國際的인 추세 및 貿易摩擦要因의 除去 및 精密化學工業의 研究開發投資 擴充을 통한 技術開發促進 등의 理由로 政府는 物質特許制度를 採擇하기로 決定한 것이다.

그러나 現行 不特許事項中 飲食物 및 기호물과 原子

核變換方法에 의하여 製造되는 物質 및 公서양속에 反하는 發明等에 對하여는 現在와 같이 계속 不特許事項으로 維持된다.

그 理由는 飲食物 및 기호물은 國民의 食生活과 密接하게 關聯되어 이를 特許하는 경우 國民生活에 미칠 影響을 考慮한 것이며, 原子核 變換方法에 의해 製造되는 物質에 關한 發明은 어느 나라나 國家의 嚴格한 統制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一般的으로 先進國을 비롯한 大部分의 國家에서도 이를 不特許事項으로 取扱하고 있다.

또한 公서양속에 反하는 發明도 公共의 秩序와 善良한 風俗의 維持를 爲해 거의 모든 國家가 特許를 許與하지 않고 있다.

또한 醫師나 藥師에 依한 處方·調劑도 2 以上の 醫藥을 混合하여 製造되는 醫藥 또는 그 製造方法의 發明에 關한 特許權의 效力에 미치지않게 함으로써 國民保健에 미치는 影響을 最小化하고 있다.

나. 特許期間

現行 特許法은 特許期間을 公告日로부터 12年으로 하되 出願日로부터 15年을 超過하지 않는 範圍內로 制限하고 있다.

그러나 改正되는 特許法은 公告日로부터 15年으로 3年을 延長하되 出願日로부터 的 制限規定은 削除하였으며 이외에 特別한 경우 5年以內의 範圍內에서 特許期間을 延長할 수 있는 特許期間 回復制度를 마련하였다. 이와 같은 特許期間의 延長 및 回復制度의 마련은 産業發達과 技術의 高度化에 따라 技術開發에 所要되는 時間이 長期化되고 있을 뿐 아니라 所要資金 역시 계속 增加하고 있으며 특히 安全 및 公害防止 등 각종規程가 強化되고 있어 發明의 實用化 所要期間이 길어짐에 따라 製品의 販賣可能期間이 점점 짧아지게 되어 特

許期間을 適正期間만큼 延長하여 發明者의 研究開發意欲을 복돋움으로써 技術開發을 促進시키고자 하는 것이다.

특히 農藥 및 醫藥等과 같이 製造 및 販賣를 위해서 特別히 政府의 承認許可가 必要한 品目들은 많은 費用 및 長時間이 所要되는 活性, 毒性試驗 等を 거쳐야 하므로 研究開發費가 增加될 뿐만 아니라 特許期間中 製品을 販賣할 수 있는 實際有效期間이 매우 짧아지게 되며 이에 따라 技術分野別 發明間에 發明에 따른 보상기회가 均等하지 않게 되어 特定分野의 技術開發意欲이 減退되는 등 問題點이 發生케 된다.

따라서 改正法에서는 이런 特定分野의 發明에 對하여 法습에 의한 試驗檢査 等으로 製造, 販賣되지 못한 理由를 立證하였을 때 5年以內의 適正期間內에서 特許期間을 延長할 수 있도록 하였다.

특히 特許期間 回復制度는 그 對象을 國內에서 實施中에 있거나 實施準備가 完了된 發明으로 制限함으로써 先進外國技術의 國內實施를 強力히 誘導함으로써 國內 關聯產業의 技術開發을 促進시킬 수 있도록 하였다.

다. 特許權者의 位置

物質特許는 그 權利範圍에 一般적으로 物質 뿐만 아니라 用途 및 製造方法까지 包含하므로 物質特許權者는 중건의 製法特許權者에 比하여 그 權利가 상당히 커지게 된다.

따라서 改正된 特許法에서는 物質特許權者의 強力한 權利에 따라 憂慮되는 權利의 濫用을 防止하기 위하여 여러가지 制度的인 防止策을 마련하고는 있으나 그 權利가 커지게 되는 것은 事實이다.

즉, 製法特許制度下에서는 物質이 同一하더라도 改良된 製造方法을 發明한 사람은 아무런 制約없이 發明을 實施, 그 物質을 生産 및 販賣할 수 있었으나 物質特許制度下에서는 改良된 製造方法을 發明하였더라도 物質特許權者의 許諾을 받아야만 그 發明을 實施할 수 있으므로 物質特許權者의 位置는 製法特許權者의 그것에 비하여 상당히 높아지게 된다.

Ⅲ. 國內產業에 미치는 影響

物質特許 採擇問題가 舉論되기 시작한 以後 國內에서는 많은 論議가 있었다. 따라서 本節에서는 物質特許가 技術開發 및 製品價格 등 國內 產業에 어떤 影響을 미칠 것인지에 대하여 그간 論議된 事項을 中心으로 整理하고자 한다.

가. 物質特許制度와 技術開發

物質特許制度가 採擇되는 경우 종래 製法特許制度下에서 可能했던 製造方法의 改良을 통한 모방생산이 不可能해짐에 따라 特許된 物質을 國內에서 生産하고자 하는 경우는 물론 이를 利用하여 他物質을 生産하는 경우도 外國特許權者의 許諾을 받아야 하므로 研究開發活動이 위축될 것이며 技術開發能力이 貧弱한 國內 精密化學業界가 莫大한 研究開發費·高級頭腦人力 및 相當한 研究開發期間이 所要되는 新物質을 開發할 수 있는 能力이 없으므로 大部分의 物質特許權은 先進外國企業이 가지게 되어 結局 國內企業은 外國企業에 예속되리라는 憂慮가 있었으며, 또한 物質特許制度를 이미 導入한 先進國의 경우를 보면 制度 導入當時의 技術開發狀況에 있어 1978年 物質特許制度를 導入한 스위스는 그 當時 87件의 新物質을 開發한 狀態였으며 76년에 이 制度를 導入한 日本은 93件의 新物質을 開發하였으며 産業構造面에서도 精密化學工業이 全體 化學工業에서 차지하고 있는 比重이 50%이었던데 비하여 우리의 경우는 지금까지 新物質開發이 단 1건에 不過할 程度로 技術開發 能力이 貧弱한 狀態이며 新物質開發에 必要한 莫大한 研究開發費 및 研究 試驗施設 等に 對한 投資能力을 갖추고 있지 못하며, 또한 産業構造面으로도 精密化學工業이 全體 化學工業에서 차지하는 比重이 20%에 不過하여 先進國과 比較하면 이제 초보단계를 넘어선 狀態이므로 國內 精密化學業界의 保護를 위해서도 物質特許 制度의 導入은 延期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이와 같은 點에 대하여 事實 從來의 製法特許制度下에서는 先進外國企業이 技術供與에 應하지 않았을 때에는 特許權者의 同意없이도 特許된 製造方法을 우회하거나 모방하여 特許品을 生産하는 것이 可能했으나 物質特許制度下에서는 이러한 우회 또는 모방生産이 不可能해지므로 特許權者의 地位가 向上되고 交渉力이 強化되는 것은 事實이다.

그러나 外國特許權者가 特許權을 濫用하여 國內로의 技術供與를 不當하게 기피하거나, 製品의 國內供給을 制限하고, 우리가 새로운 改良된 製造方法을 開發, 이를 實施하여 特許品을 生産코자할 때 特許權者가 不當하게 物質特許에 대한 實施權을 許與하지 않는 경우에 現行 制度下에서도 特許法 및 公正去來法等에 의거 이를 制限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特許法 第52條 特許權의 濫用).

한편 製造方法 特許制度下에서 技術開發에 對한 問題點을 살펴보면 製造方法 特許制度下에서의 技術模倣

에 의한 技術開發은 技術對價(Royalty)의 支拂없이 製品을 生産할 수 있다는 長點이 있기는 하나 낮은 自體 技術水準으로 模倣할 수 있는 外國의 技術은 限界가 있고 基礎技術이 貧弱한 狀態下에서의 模倣에 의한 技術水準 向上속도는 매우 느릴 수 밖에 없으며, 開發된 模倣技術이 非効率的인 경우 製品生産原價의 上昇과 品質低下로 因하여 發生되는 社會的 損失은 莫大하며 이는 産業全般과 製品의 國際競爭力에 미치는 影響이 매우 크게 된다.

또한 낮은 技術水準下의 技術模倣은 長期間에 걸처 人的·物的資源의 活用도가 떨어지는 경우가 많다. 美國의 경우 醫藥品 模倣을 위하여 最初의 研究開發에 比하여 65%의 期間과 70%의 費用投入이 必要하다는 事實이 Mansfield의 調査結果에 의하여 밝혀진 바 있다.

그리고 模倣을 통한 技術開發은 新技術開發을 위한 根本的인 아이디어의 提供뿐 아니라 導入된 技術의 完全한 消化·改良을 위하여 必要한 基礎科學을 疎忽히 하게 되어 長期的인 技術水準 向上을 위하여는 부정적 效果를 가져올 수 있다.

한편 우리의 新物質 開發能力에 있어서 技術水準이 낮고 研究設備 및 研究人力等도 充分한 것은 아니지만 國內産業界가 중견의 安穩한 模倣生産의 弊習에서 脫離하여 新技術開發研究로 과감한 投資를 해나간다면 新物質開發이 결코 어려운 일은 아닐 것이다.

新物質을 開發하기 위한 費用에 있어서 美國의 경우 3,000萬\$ 내지 7,000만\$이 所要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우리의 경우 人件費 및 臨床試驗費 등이 低廉하므로 美國의 25~35% 정도로 開發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新物質을 開發하기 위한 技術能力에 있어서도 國內에 精密化學 研究所가 設立된지 20餘年이 經過하여 그동안의 開發經驗을 통해 이미 相當한 水準에 올라 있으며 大學院 및 大學校의 關聯學科를 통한 研究人力供給의 潛在能力도 相當한 水準에 올라와 있다.

이와 같은 點에서 政府와 企業 모두가 技術開發을 위한 投資와 支援을 아끼지 않는다면 物質特許制度 導入은 精密化學業界發展에 크게 寄與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國內企業이 外國企業과 技術導入을 비롯한 各種 去來를 하는 경우의 交渉力은 國內企業이 얼마나 技術開發能力을 갖추고 있느냐에 달려 있으므로 궁극적으로 物質特許制度의 導入을 契機로 研究開發投資를 擴大하여 國內技術水準을 向上시키는 경우 오히려 交渉力이 強化될 것이다.

또한 現行 製法特許制度下에서는 外國企業이 技術供與를 하는 경우에도 特許期間이 滿了되었거나 落後된

技術인 技術提携 및 合作投資等の 形態로 提供하고 있으며 尖端技術에 對해서는 移轉을 回避하고 있는 點을 勘案할 때 物質特許制度를 통하여 그들의 特許權을 適切히 保護해 주는 경우 技術移轉이나 外國人 投資與件이 向上될 것이므로 尖端技術의 移轉이 促進되고 상당한 技術消化能力을 갖추고 있는 國內企業은 이를 통하여 보다 빠른 技術開發을 꾀할 수 있을 것이다.

나. 物質特許와 製品價格

物質特許制度가 採擇되는 경우 現在 製造方法 特許制度下에서 可能한 改良製法을 통한 模倣生産이 不可해짐에 따라 國內産業이 그 物質을 生産하기 위하여는 特許權者에게 로얄티를 支拂해야 되며 從前에 可能했던 特許權者가 아닌 第3者로부터 低廉한 價格으로 輸入하여 使用했던 것이 不可能해지고 特許權者의 價格 交渉力이 強化되어 結局 輸入價의 上昇을 초래, 關聯 製品의 價格을 上昇시키게 된다는 憂慮가 있다.

1985年 10月 韓國産業技術振興協會가 마련한 「物質特許制度 導入의 長短點 및 對策」이라는 研究報告書에 따르면 物質特許의 實施對象이 되는 醫藥品의 경우 醫藥品原劑의 輸入依存도가 80%이고 이중 特許對象 醫藥品原劑의 比重이 30%, 物質特許로 인한 로얄티 上昇이 10~15% 程度라는 前題下에 物質特許制度 導入에 따른 特許料 負擔額이 300億원에 달하고 이 負擔이 製品價格에 反映될 경우 價格上昇要因은 2.5%에 달하는 것으로 分析하였다.

또한 精密化學製品 總 生産에서 醫藥品이 차지하는 比重이 49%인 點을 勘案하면 醫藥品을 包含한 精密化學製品 全般을 對象으로 物質特許制度를 實施한 경우 特許料 追加負擔은 600億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하였다.

따라서 이와 같은 追加負擔이 現實化될 경우 國民經濟에 미치는 影響뿐만 아니라 이제 막 케도에 오른 輸出은 完全히 競爭力을 잃게 될 것이므로 物質特許制度의 採擇은 延期되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같은 物質特許로 因한 原價追加負擔과 輸出의 競爭力 惡化 問題에 대하여 物質特許制度가 採擇되더라도 物質特許가 許與되는 對象은 同制度의 施行 日인 1987年 7月 1日 以後에 出願되는 新物質로 制限되므로 既存物質에 對해서는 價格上昇의 影響이 미치지 않으며 新物質의 경우도 醫藥의 경우는 臨床試驗 및 新藥承認 등으로 약 6~10年後에나 價格上昇 등의 影響이 發生할 것으로 추정되며 農藥의 경우는 約 6年(毒害檢査 등 節次 必要), 기타 精密化學의 경우는 約 4~5年 以後에나 發生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製品價格의 決定은 市場의 需要 및 供給體系에

의해서 左右되는 바 特許物質을 代替할만한 다른 物質이 있는 경우 그 物質의 價格이 上昇되지 않는데 特許物質의 價格만 上昇될 수 없을 것이다.

예를 들면 抗生劑인 特許品 세팔로스포린의 生産者가 價格을 올린다면 消費者는 유사한 效能의 抗生劑인 페니실린을 찾게될 것이며 結局 세팔로스포린의 需要가 줄어들어 生産者는 다시 價格을 내리지 않을 수 없게 되고 이와 같이 하여 代替品인 페니실린의 存在가 세팔로스포린의 價格을 上昇시키는 것을 抑制하게 된다.

또한 外國 物質特許權者에 支拂해야 되는 技術料 負擔으로 인하여 製品原價上昇要因이 發生하나 生産者가 이를 製品價格에 反映시켜 價格을 上昇시킨 것인지 아니면 經營合理化를 통하여 自體吸收할 것인지는 여러 가지 要因에 의하여 決定될 것이나 精密化學工業의 特性으로 보아 精密化學工業은 他産業에 比하여 利潤率이 높으며 流通經路가 複雜한 點等 經營合理化등에 의한 原價節減의 要素가 많으므로 原價追加 負擔으로 製品價格이 上昇되는 幅은 그리 크지 않을 것이다.

또한 長期的으로 보면 物質特許制度로 因하여 研究開發投資가 促進되고 結果적으로 技術水準이 向上되어 오히려 關聯製品의 生産原價가 낮아질 수도 있을 것이다. 그리고 模倣生産이 不可能해짐에 따라 價格交涉力이 弱화된 憂慮는 있으나 過去 代表의인 低價供給源이었던 이태리 및 臺灣등도 이미 物質特許制度를 採擇함에 따라 로열티를 물지 않고 生産된 外國原料의 購入은 앞으로 없을 것이며 따라서 우리나라의 物質特許制度 採擇으로 因한 輸入品價格上昇은 크게 없을 것으로 보인다.

以上과 같은 觀點에서 物質特許制度가 採擇되더라도 關聯製品의 價格이 急激히 昂騰하는 일은 發生치 않을 것이나 物質特許의 波及영향이 나타날 것으로 豫想되는 1995년에 醫藥과 農藥에 대하여 Royalty 上昇 등의 영향이 미친다고 假定하였을 때 關聯業界가 追加負擔해야 할 金額을 推算해보면, 製品價格 決定要素는 크게 固定費·變動費·利潤 등으로 區分할 수 있으며 이중 物質特許制度 導入으로 因한 影響이 가장 크게 미치는 部分은 固定費中 原劑 등의 材料費와 로열티 지분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우리나라의 技術水準上 原劑를 輸入하여 Formulation을 거쳐 最終 製品을 生産하게 되므로 原劑의 價格上昇이 全體 製品價格 上昇에 가장 큰 影響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醫藥分野의 年度別 生産額, 原料所要額 그리고 實績 및 展望은 다음과 같다.

年度別 生産額·原料所要額 實績 및 展望(의약)
(單位: 億圓)

年度別 區分	'84	'85	'86 ~ '90 ~ '95		備考	
生産額 (A)	14,570	15,727	17,299	25,325	40,785	
原料 所要 額	國產	1,183	1,232			國產: 輸入 -50:50
	輸入	1,181	1,206			
	計	2,364	2,438	2,767	4,052	
構成比 (B/A)	16.2	15.5				平均 16%
成長率 (%)	16.6	7.9				平均 10% 成長
備考 (換率)	'84 (850:1)	'85 (900:1)				

1995年度의 醫藥分野의 生産額은 4兆785億圓으로 추정되고 輸入되는 原料中 30% 程度가 物質特許權이 살아 있을 것으로 推산되며 物質特許制度下에서는 로열티가 現在보다 最高 10% 程度 增加될 것으로 推定하여 豫想되는 追加費用은 年間 約 100億圓 程度이다.

<計算基準>

40,785億圓(生産額)×0.16(原料構成比)×0.5(輸入原料比)×0.3(特許對象比)×0.1(로열티負擔率)=97.9億圓
農藥分野의 豫想되는 追加費用을 算定해보면 1985年度의 賣出額은 1,940億圓이며 最近 5年間의 平均生長率인 8.07%로 1993년의 賣出額을 推산하면 3,600億圓이다.

原料構成比는 20%('85實績)이며 輸入原料比는 80%, 그중 物質特許權이 살아 있는 것은 30%, 로열티 增加는 10%로 展望하였을 때 豫想되는 追加費用은 約 17億圓 程度이다.

<計算基準>

3,600億圓(賣出額)×0.2(原料構成費)×0.8(輸入原料費)×0.3(特許對象費)×0.1(로열티負擔率)=17.3億圓
따라서 豫想되는 追加費用은 醫藥 100億圓, 農藥 17億圓으로 全體 精密化學工業이 追加負擔해야 할 金額은 200億圓 程度로서 우리의 産業經濟規模로 보아 큰 金額이라고 할 수 없다.

또한 物質特許制度 導入으로 因하여 關聯 製品價格이 上昇하는 경우 全體 國內物價에 미치는 影響을 物價指數를 통하여 算定해 보면 1983年度 全體 848個 品目에 대한 都賣物價指數 增加重值 1,000中 醫藥品加重值는 18.1(人體 醫藥品 17.1, 家畜醫藥品 0.7, 其他 0.3)이며 農藥加重值는 4.4(殺蟲劑는 2.2, 殺菌劑

1.5, 제조제 0.7)로서 醫藥과 農藥은 2.2%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全體 395個 品目에 대한 消費者 物價指數 總加重值 1,000中 醫藥品加重值是 15.2이며 農藥은 0으로서 醫藥과 農藥은 1.5%를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物價指數를 基準으로 하였을 때 醫藥과 農藥의 製品價格上昇이 全體物價에 미치는 影響은 크지 않을 것으로 豫想된다.

다. 其他

新物質開發에는 莫大한 研究開發費와 相當한 研究期間이 必要하므로 規模가 큰 大企業보다는 中小企業이 物質特許로 因하여 큰 被害를 받을 것이라는 憂慮가 있다.

그러나 物質特許制度가 導入되더라도 關聯企業 모두가 新物質을 開發하는 것이 아니라 一部 技術指向의 企業만이 新物質을 開發할 것이며 나머지 企業들은 特許對象이 아닌 物質 또는 特許權이 滿了된 物質을 生産하게 될 것이므로 二元的 産業構造가 되어 中小企業은 계속 經營을 維持할 수 있을 것이다. 더구나 精密化學工業은 精油·石油化學·肥料등의 餘他化學工業에 비해 施設投資規模가 작으므로 研究指向의 中小企業이 一部部門에 特化하여 比較優位를 가지기 쉬운 分野임을 勘案할 때 政府의 研究開發投資支援 및 物質特許制度로 因한 研究開發結果保護가 強化될 경우 中小企業의 研究開發投資가 오히려 增加되고 中小企業 保護育成이 效果의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한편 物質特許制度 導入時 化學製品 輸出이 打撃을 받을 것으로 憂慮하고 있으나 現在의 製法特許制度下에서도 國內企業이 外國特許權者의 許諾없이 製品을 生産하였다 하더라도 物質特許를 認定하고 있는 國家들에는 輸出할 수 없는 것이다. 現在 物質特許를 認定하지 않는 國家는 파리協約加盟國 97個國中 15個國에 지나지 않아 숫적으로 小數이며 市場規模도 狹小하여 輸出에 限界가 있다. 따라서 精密化學工業을 2000年代의 輸出戰略産業으로 育成하기 위해서는 物質特許를

採擇하여 새로운 發明을 適切하게 保護하여 줌으로써 外國의 尖端技術을 가진 企業들이 安心하고 國內에 投資하여 技術을 公開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그 結果로 生産된 製品을 物質特許國을 包含한 世界各國에 輸出하는 것이 輸出增大에도 크게 寄與할 것이다.

以上과 같이 物質物許制度의 採擇으로 豫想되는 否定的 側面과 肯定的 側面을 살펴보았으나 物質特許制度採擇이 우리나라 精密化學工業 및 國民經濟에 어떤 結果를 나타낼 것인지 단언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物質特許制度 採擇과 關聯한 우리 的 與件을 보면

- 技術開發에 對한 經驗과 基盤의 脆弱問題
- 새로운 物質開發을 위한 必須設備인 化學物質의 活性, 安定性試驗 研究設備의 未備
- 遺傳子 銀行 및 生物檢定體制 未備
- 로열티 追加支拂에 따른 國民負擔 增加問題
- 其他 業界 및 政府의 受容態勢 未備 등을 考慮해 볼 때

問題點이 없는 것은 아니나 現行 製法特許制度下에서는 先進國의 尖端技術 移轉이 忌避되고 模倣爲主의 技術開發로 新物質 開發이 거의 없었으며 開放經濟政策을 運用하는 大部分의 國家에서 認定하고 있는 物質特許制度를 우리나라만이 계속 外面할수 없는 立場에 있다. 또한 新物質開發은 中小企業을 包含한 모든 企業이 參與하는 것이 아니라 外國의 例를 보아도 相當한 研究開發能力이 있는 小數의 大企業이 主導하는 것이 一般의인 바 우리의 大企業도 經營戰略에 따라서는 開發能力 保有가 可能하다고 하겠다.

結論의으로 國內 精密化學産業은 物質特許制度의 採擇으로 現在와 같이 落後된 技術로 담보상대에 머물러 있을 것인지 아니면 獨自의인 技術開發促進의 契機가 되어 先進國으로 高度化되느냐 하는 轉換點에 서게 되었는 바 業界의 積極的인 技術開發努力과 政府의 支援·對備策으로 物質特許 制度 採擇을 도약의 발판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

<p>新 刊 案 內</p> <p>CIP와 商標戰略 辨理士 金 延 洙 著 價 格 : 8,000원 販매처 : 韓國發明特許協會 資料販賣센터</p>	<p>◎ KIPA通信 發刊 案內 ◎</p> <p>本會는 매월 10일 特許界 뉴스誌 KIPA通信을 發刊하고 있습니다. 國內外 特許界 뉴스를 보다 신속하게 알려드리기 위해 發刊하는 KIPA通信의 많은 애독을 바랍니다. 會員社에는 무료 提供되고 있습니다. <KIPA通信 編輯室></p>
--	--